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조례 제4934호(2011. 6. 7)로 제정된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중 일부규정에 대한 인천디자인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규정과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는 등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 당시 사용했던 일부 조문과 법제처의 법령 기준에 맞게 내용 등을 정비함(안 제1조, 안 제2조)
-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고 진흥을 위하여 인천디자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함(안 제4조의2)
- 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조사·분석·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14일(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시의회 산업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33, 팩스 032-440-87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성 명: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산업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의 육성을”을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로, “지원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지원함”으로, “향상”을 “강화”로 한다.

제2조 중 “말하고”를 “말하며”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인천디자인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시장은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고 진흥을 위하여 인천디자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센터는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그 밖에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시 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3.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시장은 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

· 조사 · 분석 · 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하 “산업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로서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서 정한 인천광역시 소재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연구 성과와 자료의 제공 및 첨단 개발기법의 지도와 교육
2. 시장이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자격 부여
3.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보육시설의 설치 · 운영
4. 그 밖에 산업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u>산업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함</u> 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 <u>향상</u>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u> ----- <u>지원함</u> ----- ----- <u>강화</u>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산업디자인”이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에 명시한 내용과 같이 제품 등의 미적·기능적·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행위를 <u>말하고</u> , 제품디자인·포장디자인·환경디자인 및 시각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제2조(정의) ----- ----- ----- ----- ----- ----- <u>말</u> <u>하며</u> , ----- ----- -----.
<신 설>	제4조의2(인천디자인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시장은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고 진흥을 위하여 인천디자인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센터는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그 밖에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2.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시 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3.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의2(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시장은 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조사·분석·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하 “산업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로서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서 정한 인천광역시 소재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연구 성과와 자료의 제공 및 첨단 개발기법의 지도와 교육 2. 시장이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자격 부여 3.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보육시설의 설치·운영 4. 그 밖에 산업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관련법령 검토 및 발체사항

관계법령	☐ 산업디자인진흥법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5조(산업디자인의 육성·개발사업) ○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 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 제8조(산업디자인의 전람회의 개최) ○ 제20조(산업디자인 전문회사에 대한 지원사항) “ 세부 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관련자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산업디자인"이란 제품 등의 미적·기능적·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행위를 말하며, 제품디자인·포장디자인·환경디자인·시각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제3조(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과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에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정책 방향
2. 개발촉진 및 진흥의 목표·대상 및 실시방법에 관한 사항
3. 개발촉진 및 진흥에 필요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발촉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제5조(산업디자인의 육성·개발사업) ① 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산업디자인 개발 등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높인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시상 및 지원
2. 산업디자인 개발을 통한 우수브랜드의 육성·지원
3. 그 밖에 산업디자인 개발 등을 통한 산업경쟁력의 향상을 위한 지원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우수한 산업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산업디자인전람회의 개최 및 지원
2. 산업디자인 분야의 벤처기업이나 그 밖에 기술성이 우수한 기업의 선정 및 지원
3. 산업디자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지원

4. 산업디자인 거래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세부 내용과 지원의 범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산학협동(産學協同)과 전문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한 재교육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필요하면 디자인 관련 전문인력의 실태를 조사하고, 전문인력의 수급(需給)에 관한 개선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조사·분석·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하 "산업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연구 성과의 제공 및 첨단 개발기법의 지도

2.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보육시설의 설치·운영

3. 고가(高價) 장비의 공동 사용

4. 그 밖에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처리하기 위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제8조(산업디자인전람회의 개최)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람회(이하 "전람회"라 한다)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전람회는 다음 각호의 부문으로 구분한다.

1. 제품디자인 부문
2. 포장디자인 부문
3. 환경디자인 부문
4. 시각디자인 부문
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부문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람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람회의 개최일시·출품물·출품료 및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전람회 개최일의 4월 이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사항)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이하 "산업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에 대한 경영지도 또는 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
2.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필요한 인력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3.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산업디자인 개발활동에 필요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개발성과의 보급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육성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비 용 추 계 서

1. 자치법규 명 :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조례

2. 소 요 비 용 : 7,365백만원(년간 약 2,0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비고
	2012	2013	2014	2015	
계	630	1,245	3,065	2,425	
1. 디자인교육지원	80	100	100	150	디자인기업 전문기술 교육 3D, 촬영, 전문프로그램
2. 디자인 국제기술교류	50	80	100	150	단체교류, 개별교류 지원
3. 디자인기업 선행디자인 지원		200	300	400	디자인기업 선행디자인 사업화 지원
4. 디자인 창의센터 구축·운영			1,500	700	디자인 창의센터(구축비, 운영비 등)
5. 디자인기업 인턴지원		100	200	300	디자인전공자 인턴 지원 을 통한 고용연계지원
6. 청소년 디자인캠프	25	30	60	70	초중학생 디자인체험 교 육(겨울, 여름방학활용)
7. 전국고등학생디자인공모전		80	100	100	기존 사업의 연속성 반영 및 예비 디자이너 육성
8. 인천디자인지원센터 운영	470	600	600	700	도서, 소재라이브러리, 2D, 3D촬영스튜디오 운영 등
9. 디자인산업현황 및 인식조사		50			디자인마스터플랜수립 시 정책반영
10. 산업디자인발전협의회 운영	5	5	5	5	디자인정책 자문
11. 산업디자인 마스터플랜수립			100		5개년 계획수립 통한 체 계적인 정책수립 및 반영

※ 근거자료 : 2010년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추진계획임.